

<제 9 호>

2020 년 4 월 23 일

❖ 순서

- 목회 칼럼
- 트럼프 대통령의 '이민 일시 중단 선포' 핵심 내용 요약
- 코로나 바이러스 - 꼭 알아야 하는 모든 이민법 관련 업무 업데이트 및 주의사항

❖ 목회 칼럼

김진우 목사 (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, 이보교 DACA 드림 TF 팀장)

오늘 하루

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래도 있습니다. 점점 가족이나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저앉고 싶은 심정입니다. 교회에 아무도 올 수 없으니 나도 집에만 있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로 나갑니다. 이민자보호교회는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찾고 커뮤니티와 나누고 있습니다. 그 정보가 누구에게는 생명수 같이 꼭 필요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 맘이 더 아프기도 합니다. 뭐가 그리 바쁘다고 교회 앞에 심어놓은 꽃에게 무심했더니 다 죽어갑니다. 그래서 오늘 흙도 갈아주고 새로 심고 물도 주었습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 입니다. 우리도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마음의 꽃을 피우는 일을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. 그 꽃을 보며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이 웃음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끝까지 서로 응원하며 이 시기를 승리하길 바랍니다.



## ❖ 트럼프 대통령의 '이민 일시 중단 선포' 핵심 내용 요약

1. **법적 근거:** 이민국적법(INA) 212(f) & 215(a), 3 USC Section 301
2. **발효일:** 이 선포는 4 월 23 일 목요일 저녁 11:59 (미 동부시간기준) 부터 발효된다.
3. **적용 대상자:** 다음 3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이민자들만 미국에 입국하는것을 일시 중단한다.
  - 1) 발효일 현재 미국 밖에 있으며,
  - 2) 발효일 현재 유효한 이민 비자가 없고, 동시에
  - 3) 발효일 현재 유효한 또는 그이후에발급된 임시여행허가서(Advance Parole, Transportation Letter 등)도 없는 자
4. **예외 대상자:** 다음 이민자들은이 선포에 영향받지 않는다.
  - 1) 영주권자
  - 2) 의사, 간호사, 전문 의료인, 코비드-19 관련 연구원, 조사원과배우자 및 21 세 미만 자녀
  - 3) EB-5 투자 이민 비자 소지자
  - 4)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21 세 미만 자녀
  - 5) 입양 자녀 (IR-4, IH-4)
  - 6) 미국 정부와 수사기관에도움이 되는자
  - 7) 미군 및 배우자와자녀
  - 8) 미국 정부 직원 또는 통역병 특별이민비자 소지자
  - 9) 국토 안보국이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정 하는자

5. **재량권:** 위의 예외규정적용 대상의 여부는 미국 대사관 영사들의재량권으로 결정한다.
6. **비이민비자 소지자:** 이 선포는 F, H, J, L, O, P, R 등을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소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. 단, 발효후 30 일 이내 대통령이노동부, 국토안보부, 국무부와협의하여 미국 노동자들고용을 우선으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7. **정치망명 신청자:** 이 선포는 정치망명및 난민 신청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.
8. **우선 추방 대상:** 이 선포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조 서류나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우선 추방 대상이 된다.
9. **만료일:** 이 선포의 만료일은발효일로 부터 60 일 이다. 발효일로부터 50 일 이내에 수정 또는 연장도 가능하다.
10. **분리 조항:** 이 선포의 일부가 무효화 되더라도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.

Translated from: 미국이민변호사협회 (AILA) 및 미국이민협의회(AIC)

Translated by 박동규 변호사

## ❖ 코로나 바이러스 - 꼭 알아야 하는 모든 이민법 관련 업무 업데이트 및 주의사항

(Updated 4/15/2020)

### 1. 이민국(USCIS)

- 1) 서류 접수 및 심사업무는 계속하고 대면업무는 잠정 중단됨.
- 2) 영주권 인터뷰, 시민권 인터뷰 및 선서식: 5/3 까지 취소됨. 추후 날짜 개별 통고함.

- 3) 영주권 및 시민권 지문채취: 5/3 까지 취소됨. 추후 날짜 개별 통고함.
- 4) 노동허가증 (EAD) 연장신청 지문채취: 기존의 지문으로 대체하여 면제함.
- 5) 지문채취 취소로 인하여 시민권(N-400), 영주권(I-485), 첫 노동허가증(I-765), 신분 변경및 연장(I-539) 신청시 최소 3~4 개월 지연 사태가 예상됨.
- 6) 보충서류 요청서 (RFE, NOID, NOIT) 제출 마감일 : 3/1 에서 5/1 사이에 이민국이 발송한 요청서에 한하여 마감일로부터 60 일 연장됨.
- 7) 항소 및 재심 요청 (Appeal, MTR) 제출 마감일: 3/1 에서 5/1 사이에 이민국이 기각한 케이스에 한하여 기각일로부터 60 일로 연장됨.

## 2. 이민국 법원(Immigration Courts)

- 1) 예비 재판 (Master Calendar): 5/1 까지 취소됨.
- 2) 본 재판 (Individual Calendar): 5/1 까지 취소됨.
- 3) 위급한 재판: 사건별로 다름. 아래 NY/NJ 소제 이민재판소 상황 참조(변동 가능)

- Newark OPEN FOR FILINGS ONLY Newark.Immigration.Court@usdoj.gov
- New York - Broadway OPEN FOR FILINGS ONLY  
NYBroadway.Immigration.Court@usdoj.gov
- New York - Federal Plaza OPEN FOR FILINGS ONLY  
NYFederalPlaza.Immigration.Court@usdoj.gov
- New York - Varick OPEN FOR FILINGS AND FOR DETAINED HEARINGS ONLY  
NYVarick.Immigration.Court@usdoj.gov
- <https://www.justice.gov/eoir/eoir-operational-status-during-coronavirus-pandemic>

### 3. 국무부(DOS)

- 1) 한국여행 경고: 최상위 4 단계 여행금지 경고.
- 2) 서울 미 대사관: 3/19 부터 비자 인터뷰 중단, 비자면제신청(ESTA)은 계속 접수중.
- 3) 국무부 비자센터 (National Visa Center): 직원 감소로 서류 진행상황 문의 창구 폐쇄. 그외 온라인 서류접수 및 서류심사는 계속됨.

### 4. 세관국경보호청(CBP)

- 1) 입국금지: 영국, 아일랜드 제외 유럽 체류한 외국인 입국 금지/ 중국, 이란 체류한 외국인 입국 금지.
- 2) 무비자 입국: 90 일 체류기간 추가로 30 일 연장 가능. 위급한 상황인 경우 무비자 입국자의 체류를 30 일 연장신청할 수있다. (8 CFR 217.3: Request for Satisfactory Departure) 현재 뉴욕, 뉴악, LA 등 9 개 공항만 가능함.
- 3) 한국인 출입국: 한국발 및 한국행 항공은 계속 운행중.

### 5. 이민세관단속국(ICE)

- 1) 서류미비자 체포는 중범자에만 한해서 함.
- 2) 병원, 검진소, 의료시설은 규정상 '민감한 지역' (Sensitive Area)에 해당 되므로 수색이나 체포하지 않음.

### 6. 노동청 영주권 신청(PERM)

- 1) 3/25 에서 6/30 까지 노동청 이민신청 허가서(Labor Certification) 서면 통지를 이메일 통지로 전환함.
- 2) 우편물을 주 1 회만 수취함.

- 3) 노동청 사이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및 보충서류 제출 가능함.
- 4) 고용주 또는 변호사가 재택근무로 주소변경시 OFLC 로 통고 해야됨:
  - 규정임금
    - 온라인: Foreign Labor Application Gateway (FLAG)
    - 이메일: FLC.PWD@dol.gov
    - 전화: 202-693-8200
  - PERM: 온라인
    - PERM system account
    - 이메일: PLC.Atlanta@dol.gov
    - 전화: 404-893-0101
- 5) 보충 서류요청(AUDIT) 마감일 연장신청 가능함
- 6) 접수일 연장(ETA-9089):
  - 첫 구인광고 시작후 180 일내 접수를 240 일로 연장
  - 단, 3/13 국가비상 선포이전 180 일 기간동안 첫 구인광고 시작한 케이스만 해당.
  - 예를들어 9/15/2019 일 이후 첫 구인광고 했다면 5/12/2020 까지 접수 가능함.
- 7) 직장내 10 일간 공지규정:
- 8) 직원들에게 이메일 공지 1 회로 대체 가능함.
- 9) ETA-9089 접수일전 180 일에서 30 일 사이에 해야한다는 기존규정에 60 일 추가

## 7. 유학생 관련사항(F-1)

- 1) 풀타임 유지 규정 바뀐것 없음: 온라인 수업으로 유지 해야됨.
- 2) 학교가 갑자기 문을 닫고 연락도 안될시에는 이민국에 반드시 연락 해야됨.
  - 전화: 1-800-892-4829
  - 이메일: SEVP@ICE.DHS.GOV

## 8. 전문직 취업신분 관련사항(H-1B)

- 1) 2021 회계년도 추첨 결과 및 서류 접수:
  - 총 85,000 명 쿼터에 275,000 명 신청함 (작년에 비해 37% 증가)
  - 석사 신청자 126,500 명/ 학사 신청자 148,500 명: 당첨 확률 31%
  -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당첨되었으나 회사 또는 신청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경우 부족분을 9/30 일 까지 수시로 재추첨하여 고용주와 변호사에게 통지함.
  - 당첨자 신청일: 4/1 일 부터 6/29 일까지
  - 급행 신청 당분간 불가능
  - 이메일 또는 팩스 싸인도 허용함: 단, 원본 서류를 추후에 요청할 가능성 있음.
- 2)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재택 근무등 일하는 장소를 옮겼을때 노동조건 허가서(LCA)를 재접수해야 하는가?
  - 규정임금이 같은 근거리 지역(Within The Same Area of Intended Employment)인 경우, 예를들어 회사가 맨하탄에 있고 뉴욕시 5 개 보로내에서 재택근무 하는경우는 LCA 재접수 안해도 됨. 그러나 직장내 10 일간 공지는 사무실내 또는 직원들 모두에게 이메일로 해야됨.

- 근무조건에 상당한 변경(Material Change)가 있으면 반드시 LCA, 10 일간 공지, 그리고 H-1B 수정(Amendment)신청을 해야됨.
- 3)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회사에서 실직한 경우 신분유지가 되는가?
- 현재로는 실직후 60 일간의 유예기간(Grace Period) 이 허용된다. 이 기간 동안에 새 고용주를 통하여 H-1B 를 신청 하든지 출국해야 한다.
  - H-1B 외에도 E-1, E-2, E-3, L-1, O-1, TN 소지자는 60 일 유예기간이 허용된다.
  - 유예기간을 180 일로 연장해 달라는 청원운동이 진행중이나 아직 통과되지 않음.
- 4) 코로나 사태로 임시 휴직(Leave of Absence)을 할경우 신분유지가 되는가?
- 회사가 일반적으로 다른 직원들 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재고용할 의사가 있으면 된다. 재고용의사를 증명할 서류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.
- 5) 임시 휴직시 임금은 받을수 있나?
- 회사가 휴직을 요구한 경우는 받을수 있다. (서류 남겨둘 것)
  - 직원이 휴직을 요구한 경우는 받을수 없다. (서류 남겨둘 것)
- 6) H-1B 소지자가 코로나 사태로 실직한 경우 실업수당(Unemployment Insurance)를 받을 수 있나?
- 없다.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언제든지 일할수 있어야 한다는 자격(Ready, Willing and Able to Work)을 요청하기 때문이다.
  - H-1B 소지자의 배우자(H-4)이고 노동허가증 카드(EAD)가 있으면 받을수 있다. 이 카드로는 언제든지 어떤 회사에서든지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.
  - 같은 이유로 L-2 배우자, E-2 배우자, OPT 소지자, 영주권 신청중 EAD 소지자들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.

7) 실업수당(Unemployment Insurance)나 산재보상(Workers' Compensation) 을 받으면 취업신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가?

- 문제가 될 수 있다. 실업수당은 실직시 받는 것이므로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신분 유지를 못한것으로 간주된다. 근무시간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도 이민국에 변경신청을 원칙적으로 해야 하므로 실업수당 청구시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필요로 한다.
- 단, 2/24/2020 부터 시행된 정부보조혜택자 (Public Charge) 입국 금지규정에 명시적으로 실업수당과 산재보상 수혜자는 제외되었다. 8 CFR 212.21(b)

8) 코로나 사태 관련 \$1,200 경기부양 체크 (Economic Stimulus Check)를 받아도 되는가?

- 받아도 된다. 신분 유지를 위해서나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도 문제되지 않는다.
- 가족들이 소셜번호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금보고번호(ITIN)만 있는 경우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.
-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국세청에서 결정하여 은행구좌로 입금해 주거나 체크로 보내줄 것이다.

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

**정리: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**

**Alone, but Together**